

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·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및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2호(2008.1.31)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중구고시 제2014-14(2014.2.26.)호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된 우리구 신당5동 85번지 일대의 신당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, 같은법시행령 제12조, 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』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처리하고,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.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은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정비계획결정 도면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.

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신당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5동 85번지 일대

다.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 내용

- 1) 구역면적 변경
- 2) 건축시설계획에서 건폐율 등 10퍼센트 미만인 범위내에서 변경 등
- 3) 정비기반시설 변경
- 4) 공동이용 시설 변경

라. 고시방법 : 구보게재

- 붙임 : 1) 변경 결정 검토보고서 1부
 2) 신당11구역 경미한변경 관련법규 검토 1부
 3) 신당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조서 1부
 4) 고시문(안) 1부. 끝.

주무관 **양정훈** 주택재개발팀장 **현병일** 주택과장 **안춘자** 도시관리국장 **전결 05/24**
이진형

협조자 주무관 **이수정** 의회법제팀장 **이창하**

시행 주택과-15579 (2016.5.24) 접수 ()
우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) / <http://www.junggu.seoul.kr>
전화 3396-5723 /전송 3396-8770 / seed22@junggu.seoul.kr / 대시민공개